

산업자원부 공고 제1999-169호('99. 9. 16)에 의해 전기사업법 개정 법률(안)이 입법예고 되었으며, 대통령령 제16,560호('99. 9. 30)로 전력 기술관리법 시행령 중 개정령이 공포 되었는바, 주요사항을 일부 발췌하여 게재합니다.

[문의 : 기획관리팀 ☎ 02)875-4471]

전기사업법 전면 개정(안)입법예고

■ 추진경위 및 일정

- 전기사업법 개정(안)입법예고 : 산자부 공고 제1999-169호('99. 9. 16)
- 시행일 : 2000년 1월 1일
- 다음의 개정(안)은 입법예고 내용중 부분 발췌임

■ 개정(안) 주요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전기사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확립하고 전기사업에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전기 사업의 전진한 발전과 전기사용자의 이익보호를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기사업이라 함은 발전사업·송전사업·배전사업 및 판매사업을 말한다.
2. 전기사업자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또는 신고를 한 발전사업자·송전사업자·배전사업자 및 판매사업자를 말한다.

3. 발전사업이라 함은 전기를 생산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를 판매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송전사업이라 함은 발전사업자 또는 자가용 전기설비를 설치한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이하 자가용 전기설비설치자라 한다)가 생산한 전기를 배전사업자 또는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설비를 설치·관리하는 사업을 말한다.
5. 배전사업이라 함은 발전사업자, 송전사업자 또는 자가용 전기설비 설치자로부터 공급받은 전기를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설비를 설치·관리하는 사업을 말한다.
6. 판매사업이라 함은 전력시장에서 전기를 구입 하여 전기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7. 전력거래대행업이라 함은 발전사업자 또는 자가용 전기설비 설치자와의 약정에 의하여 한국전력거래소를 통하여 전기의 구입 또는 판매를 중개하는 사업을 말한다.
8. 전력계통이라 함은 발전사업자 또는 자가용 전기설비설치자가 생산한 전기를 배전사업자 또는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물리적 으로 상호 연결된 전기설비를 말한다.

9. 전력시장이라 함은 전력거래를 목적으로 이 법에 의해 한국전력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을 말한다.
10. 전력거래라 함은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시장운영규칙이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전력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전력거래를 말한다.
11. 보편적 공급이라 함은 모든 전기사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정한 요금으로 전기를 공급 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12. 전기설비라 함은 발전·송전·변전·배전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기계·기구·댐·수로·저수지·전선로·보안통신선로 기타의 설비(특정 다목적댐법에 의하여 건설되는 댐 및 저수지와 선박·차량 또는 항공기에 설치되는 것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목과 같이 구분한다.
- 가.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 나. 일반용 전기설비
 - 다. 자가용 전기설비
13. 전기사업용전기설비라 함은 전기설비중 전기사업자가 전기사업에 사용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14. 일반용 전기설비라 함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소규모의 전기설비로서 한정된 구역에서 전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15. 자가용 전기설비라 함은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및 일반용 전기설비외의 전기설비를 말한다.
16. 안전관리라 함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17. 방사성폐기물이라 함은 원자력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방사성물질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로서 폐기의 대상이 되는 물질(사용 후 핵연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6장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제66조(전기사업용 전기설비의 공사계획 인가 또는 신고)

- ① 전기사업자는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공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제1항 후단의 규정에 불구하고 인가를 받은 사항 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전기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공사외의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공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개시전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기설비가 사고·재해 기타 사유로 멸실·손괴되거나 비상사태가 발생하여 부득이 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전기사업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개시 후 지체없이 그 사실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 및 제2항 내지 제4항 규정에 의한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제67조(자가용 전기설비의 공사계획 인가 또는 신고)
- ①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공사를 하고자 하는자는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공사 외의 자가용 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공사를 하고자 하는자는 공사개시 전에 그 공사계획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③ 제2항 전단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저압에 해당하는 것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의 경우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전 점사신청으로 공사계획신고에 갈음할 수 있다.

④제69조제4항의 규정은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 및 제2항 및 제4 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68조(사용전검사) 제66조 및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한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후에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69조(전기설비의 임시사용)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와 안전상 지장이 없고 전기설비의 임시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6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간 및 사용방법을 정하여 그 설비를 임시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70조(정기검사)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전기설비에 대하여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71조(일반용 전기설비의 점검)

①배전사업자는 그가 공급하는 전기를 사용하는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하여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검을 하여야 한다. 다만, 주거용 시설물에 설치된 일반용 전기설비의 경우에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승낙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려하지 아니한다.

②배전사업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일반용 전기설비가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체없이 기술기준을 갖추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및 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발생될 결과를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③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배전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 또는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점검 또는 통지의 방법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배전사업자에게 점검 또는 통지의 방법을 개선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배전사업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 또는 통지에 관한 업무를 행함에 있어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⑤배전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하여야 할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제76조의 규정에 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시·도지사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대해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전사업자에게 전기의 공급을 정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배전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⑦배전사업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점검을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⑧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검을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보여야 한다.

⑨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의 기준·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72조(기술기준) 산업자원부장관은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3조(전기설비의 유지)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 또는 일반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를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74조(물밀선로의 보호)

①전기사업자는 물밀에 부설한 전선로(이하 물밀선로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물밀선로 보호구역의 지정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따라 보호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산업법에 의한 양식업 혀가를 받은 지역에 대하여는 혀가받은 자의 동의 없이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없다.
-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보호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5조(보호구역안의 선로손상 행위의 금지)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역안에서 물밀선로를 손상시키거나 선박의 닻내림·물밀에서의 광물채취·수산물의 채취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밀선로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6조(기술기준 적합 명령)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68조 및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결과 그 전기설비 또는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전기통신선로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 전기설비 또는 일반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전기통신선로설비를 설치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그 전기설비 또는 전기통신선로설비의 수리·개조·이전 또는 그 사용의 정지나 제한을 명할 수 있다.

제77조(비용의 부담 등)

- ①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및 자가용 전기설비와 타인의 전기적설비 기타 물건 간에 상호장애를 일으키거나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후에 그 원인을 유발한 자가 그 장애 또는 지장을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그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② 전기사업용 전기설비가 타인이 설치한 지상물 기타 물건의 설치로 인하여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상물 기타 물건의 설치자는 당해 전기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그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상의 공간에 전선로를 설치한 후 1년 이내에 그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그 토지에 지상

물 기타 물건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8조(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선임 등)

- ①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그 전기설비(휴지중인 전기설비를 제외한다)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기계·토목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중에서 분야별로 전기안전관리담당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 ②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자가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 이상의 사업장 또는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전기안전관리담당자로 선임할 수 있다.
1.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기안전공사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체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 ③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④ 시·도지사는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체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⑤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수행할 수 있는 전기안전관리대행의 범위는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담당자를 선임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또는 전기설비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자를 전기안전관리담당자로 선임할 수 있다.
- ⑦ 제1항·제2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담당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체없이 그 사실을 한국전력기술인협회에 신고하여야 하

며, 전기안전관리담당자를 해임한 때에는 그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전기안전관리담당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 ⑧제1항·제2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담당자를 선임한 자는 전기안전관리담당자가 여행·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 전기안전관리담당자가 해임된 경우에는 다른 전기안전관리담당자가 선임되어 기 전까지 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105조(권한의 위임·위탁)

- ①이 법에 의한 산업자원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기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②이 법에 의한 전기위원회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③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전기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

를 지휘 감독한다.

- ④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전기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 ⑤이 법에 의한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 중 다음 각호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안전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 전기설비의 공사계획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
 2. 제68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의 검사
 3.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의 임시사용의 허용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의 규정과 제98조제3항의 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개정

■ 추진경위 및 일정

- 전력기술관리법 개정공포: 법률 제5,784호 ('99. 2. 5)
- 시행령·시행규칙개정 입법예고: 산업자원부공고 제1999-53호 ('99. 2. 22)
- 시행령 개정공포: 대통령령 제16,560호 ('99. 9. 30)
- 시행규칙 개정공포: '99. 10. 10 예정

■ 주요내용

- 전력시설물의 보수공사중 전력용량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보수공사의 경우에는 설계감리 및 공사감리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의 부담을 경감함(영 제18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

-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에 대한 감리를 그 소속 기술자 또는 감리원이 수행할 수 있는 기관에 환경관리공단·한국가스공사 및 한국전기통신공사를 추가함(영 제18조제4항)
- 설계업 및 감리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접수에 관한 권한을 전력기술인단체에 위탁함(영 제29조)
- 전력시설물 설계업 및 감리업의 등록기준 중 기술인력의 확보인원을 축소하고 사무실의 확보에 관한 기준을 폐지함(영 별표4 및 별표5)